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등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영재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영재학교의 장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

자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등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19조의2(영재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u>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영재학교의 장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u> <u>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u> <u>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u>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695